

『구미시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)결정(폐지)(안)에 대한 의견제시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가. 토미공원은 1987년 2월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결정(건교부 고시 제42호, 1987.02.07.)되었으나, 장기간에 걸쳐 공원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2020년 7월 사유지의 미집행구간이 실효 결정(구미시 고시 제2020-188호, 2020.07.02)되었고, 경상북도(교육감) 소유의 산32-1번지 역시 2012년 12월 공원조성계획 결정(구미시 고시 제2012-202호, 2012.12.20) 이후, 공원조성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

나. 따라서 최초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, 약 36년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어 사실상 공원의 효력을 상실한 토미공원을 폐지하고, 토미공원 내 경상북도(교육감) 소유부지에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 구미도서관을 이전 조성하여 명품 교육도시의 위상에 맞는 창의·융합형 인재 육성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의 문화요구를 충족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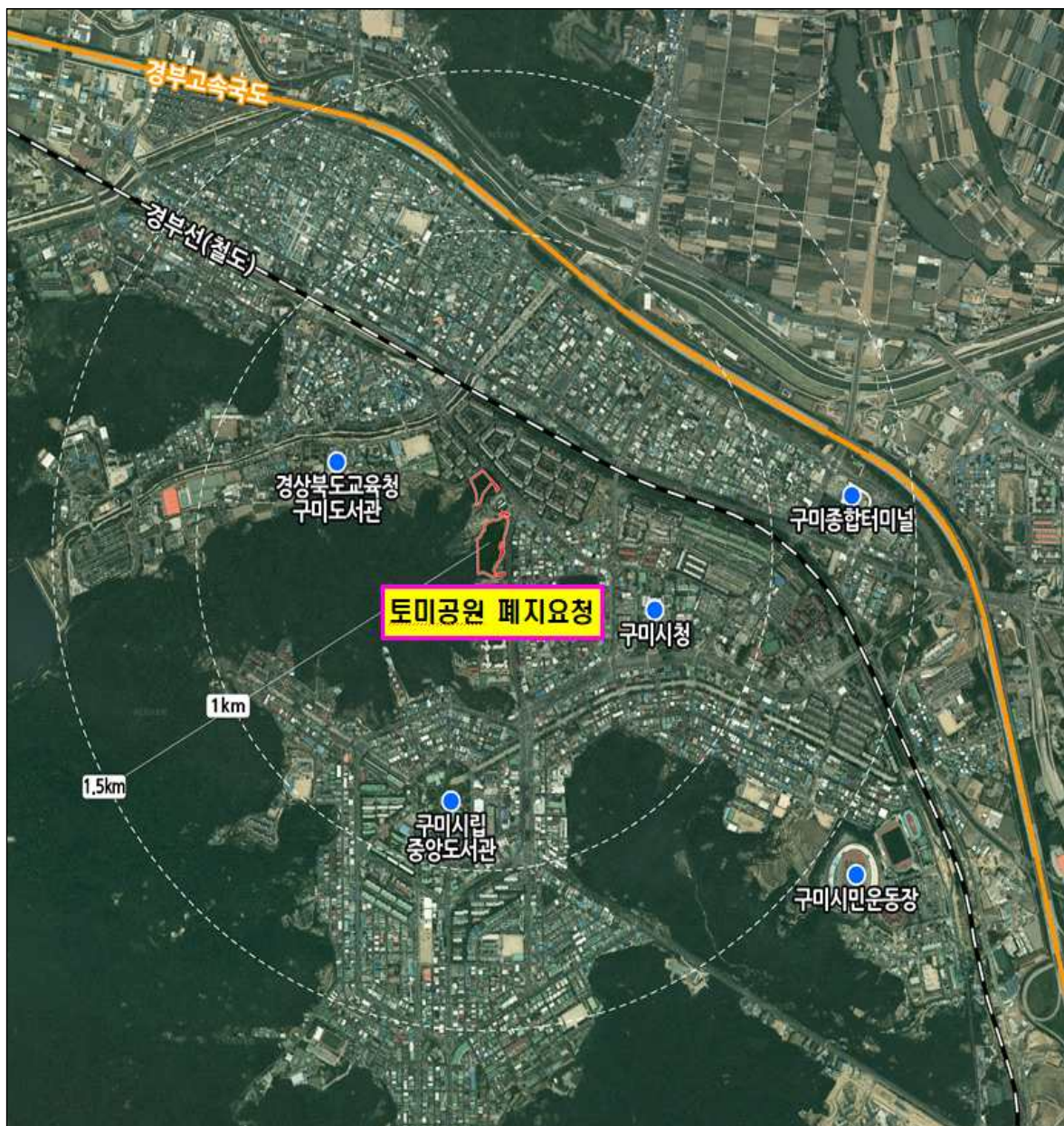
3. 주요내용

가. 공간시설(공원) 폐지

- 근린공원(토미공원) 폐지

- 위 치 : 구미시 원평동 산32-1번지 일원
- 면 적 : 19,717m²

나. 위 치 도(토미공원)



다. 드론 촬영 지도(북남 방향)



※ 가운데 부분은 사유지로 2020년 7월 실효 결정되었음

라. 위성 지도(남북 방향)

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」 제22조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)결정(폐지)(안)에 대한 의견제시」의
견은
 - 구미시 원평동 산32-1번지 일원 근린공원(토미공원)으로 결정된
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
제출된 안으로써,
 - 1987년 2월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
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어 공원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일부
사유지 구간이 실효 결정(2020.7.2.) 됨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
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